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업 주도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422	4년	20	65%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시장확대형	920	2년	6	75%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시장대응형	459	2년	5	75%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1,284	1년	1.2	80%	1차	1월	2월	5월
							2차	4월	5월	8월
							3차	7월	8월	10월
TIPS		일반형	807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특화형 (딥테크 팁스)	394	3년	15	80%	상반기			
						하반기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협 력 형 R & D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기술개발	예비연구	10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사업화R&D	10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산연협력 기술개발	예비연구	4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사업화R&D	6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정 책 목 적 형 R & D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현장적용)		119	3년	4.5	75%	하반기	2월	2월~ 3월	6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7	3년	연봉 50%	50%	상반기	2월	2월	5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9	3년	연봉 50%	50%	상반기	2월	2월	5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2월	상시	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48	2+1년	12.1	100%	상반기	1월	1월	2월

-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2)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1 정책방향

- ①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테마형 지원 등 중점 투자분야를 지정하고, 지원 방식 다각화를 통한 중소기업 R&D 전략성 강화
- ② 민간의 자율과 책임 중심의 R&D를 확대하고, 투자·판로 등 협력형 R&D 강화로 민간주도 R&D 확산
- ③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협력R&D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④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 확대 및 R&D 제도 혁신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4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6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체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채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8 관련 법령 및 규정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2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지역별 대면 설명회

- (대면) '24. 1. 26. ~ 2. 5. (*13개 지역)

* 지역별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SMTECH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설명자료)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14개 부처 참여

- (일정) '24. 1. 24. (예정)

3.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4,232억 원(신규 1,801억 원, 계속 2,431억 원)

□ 지원대상 :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422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수출강소) 수출 강소기업군 육성을 위해 수출제품 및 해외 공급망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수출성장) 수출 유망기업군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시장확대형(920억 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연계)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전략형) 중점 전략분야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 (후불형) 중소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기술개발지원
- 시장대응형(459억 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원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원		

(2)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5,317억 원(신규 2,485억 원, 계속 2,832억 원)

□ **지원대상**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공통사항 외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세부공고에서 확인

□ 지원내용

- ① 디딤돌(1,284억 원) : 다양한 초기 창업기업의 R&D 수요 충족 및 균형 성장 지원
 - (글로벌 일류) 글로벌 혁신기술,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 (균형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서비스, 여성기업,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
 - (민관협력) 스타트업의 R&D와 사업화 지원·투자 등 민간의 스타트업 지원 기능과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성과 제고
- ② TIPS(1,201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TIPS	일반형	최대 2년, 5억 원		
	특화형	최대 3년, 15억 원		

(3)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71억 원(신규 30억 원, 계속 241억 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20억 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10억 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 원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4)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3대 핵심분야 >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1.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 유연생산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기술 확보
3. 현장적용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 지원규모 : 436.7억 원(신규 119.3억 원, 계속 317.3억 원)

□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 현장적용('24~'26, 119.3억 원)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지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첨단제조	최대 4년('22~'25), 36억 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
유연생산	최대 4년('22~'25), 36억 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
현장적용	최대 3년('24~'26), 4.5억 원 이내	75% 이내	품목지정

(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44억 원(신규 149억 원, 계속 195억 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37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단위 : 만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3,200	3,500	3,800	1,600	1,750	1,900
석 사	4,100	4,500	4,900	2,050	2,250	2,450
박 사	5,000	5,500	6,000	2,500	2,750	3,000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39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5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선정하여 센터당 12.075억 지원(24년 4개 센터 선정)

□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자유공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50% 이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50% 이내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2+1년 센터당 12.075억/년	100% 이내	

4.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업주도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사업실)	
		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협력형 R & D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기술개발과	(전략협력사업실)
			사업화R&D		
		산연협력	예비연구		
			사업화R&D		
정책목적형 R & D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현장적용)	디지털혁신과	(제조DX혁신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	(지역정책기획실)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